

경영학 전공 교과과정 편성에 있어 제조물 책임론과목 설계에 관한 연구

白 淩 鉉*

《目 次》

I. 문제의 제기	IV. 제조물책임론 설계상의 문제
II. 제조물 책임의 개념설정과 문제	1. 제조물책임 관련과목의 개설현황 과 추세
III. 제조물책임 문제의 전개와 현황	2.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범위 3. 교수방법상의 특징과 문제
1. 제조물책임 문제의 전개	V. 結論
2. 제조물책임 문제의 현황	
3. 한국에서의 제조물책임 문제의 전개와 현황	

I. 문제의 제기

지난 25년동안 기업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제기해 본다면 그것은 세계화(globalization)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유형의 기업이 창출하는 재화들은 세계의 여러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들은 모든 교류의 약 70%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이상과 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교역은 년간 약 \$3조에 이르고 있으나 국제통화의 거래는 년간 \$35조에 이르고 있어 그것의 약 10배이상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

이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교역은 물론 국제통화와 외환거래는 세계화를 매우 신속히 가속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세계화는 기업에게 과거와는 전혀 상이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새로이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다. 그 중

* 西江大學校 經營學科 教授

(1) Earl Naumann, *Creating Customer Value-The Path to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Thomson Executive Press, 1995, pp.11-12.

에서도 매우 팔목할만한 문제가 바로 제조물 책임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창출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사회를 풍요롭게 조성하는 역할을 하지만 반면 이는 많은 부작용(또는 문제)를 동시에 유발하고도 있다. 즉 작게는 부상과 질병 그리고 방사능과 같은 인사사고로부터 화재, 폭발 그리고 폭손과 같은 재물손괴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문제 나아가서는 대기, 수질, 토양 그리고 방사선과 같은 문제를 담고 있는 지역수준의 문제 그리고 산성비,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실화 현상과 같은 지구수준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환경문제들이 바로 그와 같은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어 매우 광범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파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기업의 최후 지지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할 수 있는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법정문제로 비화되어 막대한 배상을 해야만하는 이른바 "Million award"라는 소송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서 몇몇 재화(고엽제, 아스베스토스등)를 생산하던 기업들은 이와같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파산하고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은 단 한개도 안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 법리의 문제는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또한 크게 달라졌다는 점은 유의할만 하다.

그리고 보험과 같은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수단의 개발마저도 매우 저조하여 이에 대처할수 있는 신종보험과 같은 상품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 따라서 특별히 이른바 선진국시장 특별히 미국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는 이에 관한 조치가 긴급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경영학분야에서도 이에 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경우에도 전 교과과정을 통하여 한 번도 이에 관하여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당장 이 문제가 우리 기업에게 심대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멀지않은 장래에는 매우 중요한 기업문제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교육방법도 이의 다양한 구성내용에 비춰 본다면 강의 일변도의 방법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문제는 그의 내용에 있어서나 교육방법에 있어서 독특한 설계와 준비가 필요한 것이며 경영학의 토착화문제로 고심하는 차제에 이는 매우 의의깊은 일이 되기도 할것이다.

Ⅱ 제조물 책임의 개념설정과 문제

제조물 책임은 품질보증의 개념과는 전혀 구별되는 개념이다.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이란 품질의 개념과 보증이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이다.

첫째로 오늘날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품질의 개념은 소비자 지향적 정의(consumer-based definition)이다. 과거 상당기간에 걸쳐 품질의 개념은 제조 지향적 정의(manufacturing-based definition)와 제품 지향적 정의(product-based definition)를 추수하여 왔다.

제조 지향적 정의는 설계품질(quality of design), 적합품질(quality of conformance or manufacturing) 그리고 검사품질(quality of inspection)과 같은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품질개념의 총체로 설정하는 것이며, 제품지향적인 정의는 JIS Z 810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품이 지니고 있는 품질적 특성(quality characteristics)을 특별히 가시적인 특성의 총체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²⁾

그러나 소비자 지향적 정의란 시장 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들의 전체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ISO 8402(vocabulary)에 의하면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담고 있는 특징과 특성의 전체”(the totality of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a product and service that bear on its ability stated or implied needs)로 정의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상과 같은 품질의 개념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태적인 것은 결코 아닐 것이며 그들의 요구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의 품질의 개념은 재화나 서비스가 지니는 고유의 성질과 성능의 전체라는 객관적인 품질 뿐만아니라 소비자나 사용자의 사용목적을 만족시켜 주는 주관적인

(2) • 제조지향적 정의의 경우: Phillip B. Crosby, *Quality is Free*, N.Y.: New American Library, 1979, p.15.

Harold L. Gilmore, *Product Conformance Cost, Quality Progress*(ASQC), June 1974, p.16.

• 제품지향적 정의의 경우: Lawrence Abbott. *Quality and Competition*, N.Y.: Columbia Univ. Press, 1955, pp.127-126.

Keith B. Leffler, "Ambiguous Changes in Product 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82, p.956.

품질까지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즉 품질의 사회성에 관해서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와같이 오늘날 기업에서 용납하고 있는 품질의 개념은 매우 철저하게 소비자 지향적인 정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매우 동태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성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개념으로 전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전화되고 있는 품질의 개념이 과연 법률에서 정의되고 있는 품질의 개념과 일치되고 있는가는 기업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즉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던 그것을 재화나 서비스에 담으려고 노력하려 할 것이나 이것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품질의 개념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살상율이 높은 총포의 제작은 좋은 경우가 될 것이다.

둘째로 보증(assurance)의 개념은 보상(compensation)이나 이를바 “warranty”의 개념과는 구분되는 또다른 개념이다. 즉 품질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측면이 있다. 하나는 소비자들에게 품질로서는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하나는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만족을 부여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는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며 후자는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다.

보상이란 전자와 같은 필요조건을 만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을 말 한다. 그러나 보증이란 기업이 이상과 같은 필요조건 뿐만아니라 충분조건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체계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것을 지칭한다. 그리고 “warranty”란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사전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³⁾ 따라서 품질보증은 사후적인 것으로부터 사전적인 것으로 옮겨 가고 있음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제조물책임이란 배상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원인은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결함(defect)이라고 할 수 있다.⁽⁴⁾ 그러나 결함이라는 개념이라

(3) JIS의 품질보증의 정의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행하는 체계적인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법률에서의 결함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는 “one who sells any product in a defective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 to the user or consumer or to his property is subject to liability for physical harm thereby caused to the ultimate user or consumer or to his property.....”로 규정되고 있다.

는 개념에는 또한 많은 논의가 있음에 유의해야만 할 것이다. 특별히 법률에서는 이것에 관한 정의가 매우 추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Restatement 2nd of Torts. Section 402A”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위험한(unreasonably dangerous) 상태”로 규정하고 있어 매우 추상적이며, 모호하다.

나아가서 이문제에 관한 최근의 많은 판례에서 보듯이 불법행위에 관해서도 과실책임(negligence liability)으로부터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묻게 되었으며, 보증책임에 관해서도 명시보증(negligence liability)으로부터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묻게 되었으며, 보증책임에 관해서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

즉 이상에서와 같이 책임의 성격과 보증의 내용이 크게 변질됨에 따라 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해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그리고 매우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에 관하여 편의적인 해석을 한다면 설계상, 제조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물을 사용하거나 또는 제3자가 그것 때문에 받은 손해에 관하여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져야만할 배상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⁶⁾ 그러므로 제조물책임 문제는 기업의 전통적인 품질보증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를 예전하면서 소비자 요구의 변화, 제품결합 개념의 변화, 예전가능한 위해에 대한 배제, 나아가서는 소비자가 사용할 때에 쓰는 주의의 한계와 같은 새로운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는 문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 특별히 유념해야만 할 것이다.

III. 제조물책임 문제의 전개와 현황

1. 제조물책임 문제의 전개

제조물책임 문제는 이른바 선진국 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특별히 최근에 이르러 일본과의 교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에 관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특징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5) 엄격책임이란 “공동사회에 있어 공동의 지식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상의 위험”에 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하고 있다.

(6) JIS Z 801을 참조.

즉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특별히 미국의 경우 높은 권리의식, 소송을 선호하는 미국특유의 국민성, 기업의 제조물로부터 입은 이른바 공적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제도의 불비, 법률로 강제되고 있는 자동차 보험, 매우 낮은 보상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의료보험 제도 그리고 너무나 많은 수의 변호사를 들어 볼 수가 있다.⁽⁷⁾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매우 저렴한 제소비용(filing fee), 성공보수 방식에 따르는 변호사비용지불제도 그리고 원고에 유리한 재판제도와 같은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

그리고 미국에서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면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의 전개는 초기에는 명확하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여 왔다. 그후 1963년 캘리포니아 최고재판소에서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우는 이른바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 in tort)로 전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⁹⁾ 그러나 담배나 술과 같이 본원적으로 결함을 지니고 있는 제조물에 관해서는 엄격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에서도 1985년 이후 이와같은 방향에서 통일지침을 마련하고, 후속적으로 법제정을 서둘러 조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리고 1968년에는 의도된 사용(intended use)의 개념을 확장하여 이른바 "second collision"에 관하여 제조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으며 제품의 잘못 사용에 관해서는 항변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되고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다.⁽¹⁰⁾

그리고 입증책임의 변화도 1978년 이른바 "Baker vs Lull Engineering Co." 전에 관한

(7) 변호사의 수는 미국이 70만명정도, 일본은 13,000명정도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3,000명 정도이다.

(8) 배심원에 의한 배심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제조물책임 문제는 그들의 능력을 벗어나고 있다.

(9) Roy M. Brisbois, *California Products Liability-Law and Practice*, 1985, pp.2-6. 이 문제에 관한 선구자적인 미국의 판례와 법 그리고 EC제국의 입법동향은 전통적인 책임법리라고 할 수 있는 계약책임과 과실불법행위 책임이 계약당사자관계(privity of contract)와 과실(negligence)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였으나 이에 수반되는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엄격책임주의를 도입함으로서 결합책임 뿐만 아니라 개발위험(development risk)의 항변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는 순수한 의미의 무과실책임은 아니다.

(10) 의도된 사용의 개념을 확장시키게 된 계기는 1966년 미국 연방고등법원(제 7 구)의 Evans vs. GM에 있어 "second collision"에서는 제조물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던 것이다.

〈표 1〉 각국의 제조물 책임 입법상황

국 가	내 용	국 가	내 용
• 미국	국 1960년이래 각종판례	• 오스트리아	1988년 1월 21일 제정 1988년 7월 1일 시행
• 영국	1987년 5월 15일 제정 1988년 3월 1일 시행	• 노르웨이	1988년 12월 23일 제정 1988년 7월 1일 시행
• 그리스	1988년 3월 31일 제정 1988년 7월 30일 시행	• 핀란드	1990년 9월 17일 제정 1991년 9월 1일 시행
• 이태리	1988년 5월 24일 제정 1988년 6월 29일 시행	• 아이플랜드	1991년 3월 20일 제정 1992년 1월 1일 시행
• 룩셈부르크	1989년 4월 21일 제정 1989년 5월 2일 시행	• 스웨덴	1991년 12월 17일 제정 1993년 1월 1일 시행
• 덴마아크	1989년 6월 7일 제정 1989년 6월 10일 시행	• 스위스	1992년 10월 제정 시행은 미정
• 독일	1989년 12월 5일 제정 1990년 1월 1일 시행	• 리히텐슈타인	1993년 1월 14일 제정 시행은 미정
• 네덜란드	1990년 9월 13일 제정 1990년 11월 1일 시행	• 오스트레일리아	1992년 7월 9일 제정시행
• 벨기에	1991년 2월 25일 제정 1991년 4월 1일 시행	• 대만	1993년 2월 22일 제정 1993년 9월 시행
• 아일랜드	1991년 12월 14일 제정 1991년 12월 16일 시행	• 필리핀	1992년 4월 13일 제정 1992년 7월 16일 시행
• 프랑스	법률안 심의중	• 일본	1994년 6월 22일 제정 1995년 7월 1일 시행
• 스페인	법률안 작성중임		

자료: 지수현, 손해보험협회, 1995년 3월, p.40.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의 판결이 계기가 되었다. 이내용은 공사현장에서 "high lift loader"를 이용한 목재적재 작업중 발생한 부상은 기업이 무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설계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이는 결함의 유무는 설계에 근거하여

“risk-benefit”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사고가 기초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포드자동차 회사의 Pinto사건, 독일의 Thalidoide사건, 프랑스의 Baby Powder 사건 그리고 SMON사건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제조물 책임문제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향이 농후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예를 든다면 1990년 미국과 일본의 구조적인 무역장벽의 완화를 위한 협상(Structural Impediments Initiatives: SII)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문제는 결함은 하나이지만 여러 곳에서 같은 종류의 제조물 책임소송으로 제기되는 이른바 “Mass Tort”的 사례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는 역시 기업에게 주는 피해는 매우 크게 가중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다음 <표 2>는 최근의 “Mass Tort”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제조물 책임문제의 변화추세를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관련법 규는 고실책임주의에서 엄격책임주의로 옮겨지고 있으며, 둘째로 결합의 개념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고, 셋째로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뤄져 소비자로부터 기업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넷째로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섯째로 하나의 결함은 세계 도처에서 많고 그리고 같은 소송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제조물책임 문제의 현황

제조물 책임문제는 19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미국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후 미국내에서도 이문제는 크게 확산되었을 뿐만아니라 다른나라에 까지 매우 신속히 파급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특별히 제조물 책임에 관한 소송은 아직도 미국에서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소송건수의 추이를 정리해 본다면 다음 <표

<표 2> 최근의 “Mass Tort” 사례

피고회사	제 품	소송건수	배상총액 (\$)
• John-Manville사	아스베스토스	52,700	20억
• M.H. Robins사	여성용 피임구(IUD)	7,700	2억 5,900
• Monsanto사 등 6개사	고엽제	40,000-50,000	1억 8,000
• Merrell Dow사	Bendictio*	800	1억 2,000

자료: 山口政久(사국시대학 교수), 「판례로 본 PL의 실태」, 1991년.

*: Bendiction은 여성 입덧용 약품임.

〈표 3〉 전미국 제조물책임 소송건수

년도	발생건수	전년대비 비율
• 1974년	1.579	
• 1975년	2.886	+83%
• 1976년	3.696	+28%
• 1976년	4.077	+10%
• 1978년	4.372	+7%
• 1979년	6.132	+40%
• 1980년	7.755	+26%
• 1981년	9.071	+17%
• 1982년	8.994	-1.4%
• 1983년	9.221	+3.1%
• 1984년	10.745	+16.5%
• 1985년	13.554	+26.1%
• 1986년	13.595	+0.3%
• 1987년	15.151	+11%
• 1988년	17.140	+13%

자료: 山口政久(사국시대학 교수), 「판례로 본 PL의 실태」, 1991년.

3)과 같다.

〈표 3〉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 본다면 [아스베스토스]관계, 의약품관계 그리고 [모터싸이클]과 자동차와 같은 운반구관계의 것들이 대종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후로는 화학약품, 산업용, 농업용기계, 공구, 식품, 가정용품, [레저]용품, 가전제품, 항공기등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소송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¹¹⁾

다음 〈표 4〉은 미국에서 발생한 일본기업의 품목별 제조물 책임에 관한 소송건수의 추이이다. 이에 의하면 자동차관계에서 소송이 가장 빈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드리고 다음 〈표 5〉는 미국에서 판결이 이뤄진 평결액 평균의 추이를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여기에서 팔목할만한 문제는 고액으로 판결이 난 이른바 "million dollar award"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표 6〉은 이에 관한 추이를 설명하고 있다.

(11) W.K. Viscusi & Moore M.J., "Product Liabil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nov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101, Feb. 1993, pp.161-184를 참조.

〈표 4〉 미국에서 발생한 일본기업의 품목별 소송건수

년 도	자동차	의약품	가 스	기계 및 장비	식료품	전 물	기 타	합 계
<hr/>								
-1945								
1945-49						1		1
1950-54								
1955-59			1					1
1960-64								
1965-69		1	3				1	5
1970-74	6		2	4	2	3	3	20
1975-79	11	10	4	6	6	5	1	43
1980-	1	3	4	2	1			11
합 계	18	15	13	12	10	8	5	81

자료원: Koich Hamada, Hidetoh Ishida, Masahiro Murakami, *The Evolution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Product Liability in Japan. Law and Trade Issues of the Japanese Economy*. Univ. of Washington Press. 1986. p.92.

〈표 5〉 미국에서의 평균평결액 추이

년 도	평균배상판결액(\$)	년 도	평균배상판결액(\$)
• 1975년	363.580	• 1981년	800.586
• 1976년	366.081	• 1982년	850.700
• 1977년	430.948	• 1983년	1,245.646
• 1978년	1,657.187	• 1984년	1,081.932
• 1979년	761.009	• 1985년	1,091.005
• 1980년	563.438	• 1986년	1,971.655

자료: 山口政久(사국시대학 교수), 「판례로 본 PL의 실태」, 1991년.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건은 뇌장애와 사망과 같이 매우 결정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살펴 본다면 제조물책임 소송이 가장 큰 몫을 차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다음〈표 9〉은 일본통산성의 다국적기업 연구회에서 자본금 10억엔이상의 기업 27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그동안 해외소송경험이 있는 회사는 74개 정도였으며, 1979년부터 12간에 걸친 소송건수는 306건이었고, 그중 211건이 미국에서 발생했고, 내용을 살펴 본다면 제조물책임 소송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이하

〈표 6〉 "Million Dollar Award"의 추이

년도	건수	년도	건수	년도	건수
1978	15	1983	96	1988	71
1979	34	1984	95	1989	89
1980	33	1985	97	1990	93
1981	61	1986	66	1991	76
1982	71	1987	69		

자료: Current award trends in personal injury. Jury verdict Research Inc. 1993.

〈표 7〉 인사사고 소송중 "Million Dollar Award"의 추이

년도	건수	년도	건수	년도	건수
1962	1	1963	2	1964	1
1965	2	1966	1	1967	3
1968	5	1969	3	1970	7
1971	14	1972	23	1973	18
1974	24	1975	27	1976	45
1977	70	1978	74	1979	109
1980	113	1981	200	1982	253
1983	302	1984	375	1985	441
1986	397				

자료: 山口政久(사국시대학 교수), 「판례로 본 PL의 실태」, 1991년.

〈표 8〉 "Million Dollar Award"의 발생형태

상해형태	건 수	상해형태	건 수
• 뇌장해	104	• 사망	60
• 사지마비	99	• 수족절단	40

자료: 山口政久(사국시대학 교수), 「판례로 본 PL의 실태」, 1991년.

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 소송문제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추출 할 수가 있다. 첫째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문제는 미국에 국한하여 제기되었던 문제

〈표 9〉 해외에서 제소된 소송의 내용

소송내용	지 역 합 계	내 용		
		미 국	미국외 선진국	개발도상국
• 제조물책임관계	68	64건	3건	1건
• 덤핑·관세·통상관계	63	35	26	2
• 계약위반관계	47	20	97	18
• 독점·부정경쟁관계	42	42	—	—
• 특허·상표등 공업소유권관계	36	20	13	3
• 노동·고용관계	15	9	1	5
• 기타	35	21	4	10
합 계	306	211	56	39

자료: 山口政久(사국시대학 교수), 「판례로 본 PL의 실태」, 1991년.

이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선진국 시장을 가지고 있는 세계도처의 기업에게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전개되고 있다. 둘째로 이 소송의 평결액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면 고액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바 “million dollar award”와 “mass tort”가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까지 하고 있다. 셋째로 소송의 내용은 주로 뇌에 치명적인 장애를 주었거나 사망을 불러 와 인체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이다.

3. 한국에서의 제조물 책임문제의 전개와 현황

1960년 이래로 한국의 기업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체제 그리고 대규모화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기업이 창출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한 피해사고가 빈번해져 심각한 사회문제까지도 유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다음 〈표 10〉은 우리나라에서 1992년 한 해동안 소비자에게서 발생한 피해액을 집계·요약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표 10〉은 일본의 1975년-1976년과 매우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가 있다.⁽¹²⁾ 즉 한국의 경우도 최근에 이르러서는 산업의 전부문에 걸쳐 소비자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적지만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다.

한국에서 최초로 제조물에 관한 법률제정이 시도되었던 것은 1982년 12월 제110회 임

(12) 송태희, “제조물책임의 입법화와 경제적 영향,” 「경영과 기술」, 1994. 10월.

〈표 10〉 1992년 소비자 피해액

(단위: 억원)

품 목	국내상품	수입상품	합 계
• 식표품	103.6	50.2	153.6
• 주거	9.3	—	9.3
• 일반가구	6.2	0.2	6.4
• 가전제품 및 가정용기구	15.0	—	15.0
• 주방용품 및 가사소모용품	73.2	0.3	73.5
• 피복·신발 및 장신구	6.9	0.2	7.1
• 의약품	75.5	0.5	76.0
• 보건·의료용기구	6.0	—	6.0
• 보건·의료서비스	88.7	—	88.7
• 교양·오락용기구	41.9	2.8	44.7
• 교통	404.3	—	404.3
• 기타소비지출	371.6	3.3	374.9
합 계	1,202.3	• 57.5	1,259.7

자료: 소비자위해 실태 및 의식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3. 6

수입상품 소비실태 및 의식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3.

의료보험통계연보, 1992, 1993, 의료보험연합회.

시국회에 법률이 상정됨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법률안은 제조물책임법안이었으며 김순규 의원의 25인의 의원명의로 발의되었었다. 그리고 이법안의 골자는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 결합 및 인과관계의 추정, 과실상계의 특처, 손해배상조치, 보장사업등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그후 1990년 1월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에서 18개의 조문으로 만들어진 법안을 건의한바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어 1992년 제7차 경제사회개발 5년계획에서 소비자보호부문 시책에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내용은 소비자보호관련법령의 보완, 소비자생활관련정보제공인 소비자보호체제구축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특별히 냉·난방기, 가정용 전기제품, 의료기와 같이 위해발생가능성이 큰 제품에 관해서는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후 1994년 발표에 있어서는 소비자 소송제도 운영에 관한 것이 제시되고 있으며,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과 의료사고 분쟁 조정법의 제정을 제기하고 있다.⁽¹³⁾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조기업들은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거의 무관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대한화재보험(주)의 경우 1992년 말 이보험의 계약건수는 902건, 보험료는 47억 원으로 국내생산 제조물의 약 1%에도 미치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이유는 첫째로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유교문화 때문에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아직도 매우 낮다는 이유를 들어 볼 수가 있다. 한편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1994년 5월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미국 변호사법인인 **Campell & Associates**의 주관으로 제조물책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에서는 이에 관한 본격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4년 6월에는 삼성전자(주)는 넌간 약 2조 5.000억에 상당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서 1인당 그리고 1사고당 10억 원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획기적이다.

한편 그동안 선진국시장과의 교역이 적지만은 않았지만 기업의 생존에 위협을 미칠 정도의 커다란 제조물책임소송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전혀 소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을 열거한다면 1993년 5월 현대자동차(주)의 안전벨트관련 소송으로 1.300만불의 손해배상을 했으며, 고려사의 전기오븐소송에서는 6만불에 달하는 보상요구 그리고 신동아사의 개스라이터소송에서는 15만불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IV. 제조물책임론 설계상의 문제

제조물책임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주로 선진국시장을 다수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무관심으로 넘어 둘 수 없는 현실적으로 긴박한 문제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야 걸쳐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학에서의 교육(*education*)은 그들중에서도 가장 우선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

(13) 제조업자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고, 다수인의 공통 이해관계자가 집단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과 의료사고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전치주의를 백하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기금의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육이란 훈련(*trainning*)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일차적인 목표가 의식의 전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출발한 경영학을 도입하여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교육해 온지 4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듯 한 측면이 매우 많아 항상 경영이론과 기법의 토착화라는 문제가 때때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향에서 대학의 경영학 전공 교과과정에 제조물 책임론을 독립과목으로 존치시켜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제조물 책임관련과목의 개설현황과 추세

우리나라 대학의 경영학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의 편제는 거의 예외없이 관리론중심의 경영학을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이나 대학의 특성에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와같은 교과과정하에서 제조물 책임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다룰 수 있는 교과목이라면 생산관리(*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마케팅관리(*marketing management*) 또는 기업법(*business law*)과 같은 교과목에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경영학 분야에서 새로운내용을 중심으로 재교육해야만 할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24학점-30학점(5개학기기준)이라는 이수학점의 제한 때문에 관련 교과목의 수는 더욱 제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에 의하면 전공인정학점을 총이수학점의 1/4-1/6로 하향조정하도록 되어 있다.⁽¹⁴⁾ 그러므로 새로운 교과목을 독립과목으로 교과과정에 추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생산관리론 교과서는 개략적으로 35개종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들중 7개종만이 제조물책임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그것도 모두가 개념을 설명하는 정도로 마치고 있다. 그리고 품질관리(경영)관련 교과서는 약 15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으나 그중 6개종만이 제조물책임에 관한 개념정도를 취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들이 항상 모방하고 있는 미국대학에서의 경영학교과과정 특별히 생산관리론중심으로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견된다는 것이다.⁽¹⁵⁾

(14)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 제 2차 대통령 보고서, 5월 31일, 1995년.

첫째로 미국의 제조기업이 점진적으로 활기를 찾아 감에 따라 한 학기로 교수를 종료하던 생산관리론이 2개 학기에 걸쳐 교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종래에는 기능별 영역으로 현격하게 구분하여 교육하던 교과목들을 내용상 긴밀한 연관을 가지는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생산관리론과 마케팅관리 관련과목을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교수방법도 따라서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른바 “팀·티칭”(team teaching)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 사례연구(case study)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변화에 맞춰서 다음(표 11)과 같은 새로운 과목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권유받고 있다.⁽¹⁶⁾

그리고 연구되어야만 할 문제에 관해서도 다음(표 12)에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새로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었으면 바람직하겠다는 교과목, 워샵 그리고 연구제목에도 제조물책임 또는 이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여유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과 이와 관련하여 장래를 조명해 본다고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만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교육차원에서의 적절한

〈표 11〉 새로이 권유된 과목과 워샵

새로이 권유되고 있는 과목	새로이 권유되고 있는 워샵
1. Structure and Organization for TQM	1. Benchmarking and Business Re-Engineering
2. Management Innovation	2. Quality Assessment Workshop
3. Quantitative Skills and Tools in Management	3. Enlightened Leadership Skills
4. New Product and Service Development	4. Creating High Performance Teams
5. Integrated Cost Management in a TQM	5. Total Customer Satisfaction
6. Sale. Marketing and Market Research in a total Quality Company	6. Total Communication Skills
7. Financial Analysis and Reporting in a Total Quality Company	7. Innovative Financial Engineering
8. Using Total Quality in Portfolio Management	8. Multinational Management Game

- (15) Progress Report, *Sogang-IBM Total Quality Management Partnership*,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ogang Univ., March 1995, pp.5-11.
- (16) Vision for Excellence in Management Education, *Sogang-IBM Total Quality Management Partnership*,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ogang Univ., Jan. 1995, pp.5-11.

〈표 12〉 새로이 권유되고 있는 연구

새로이 권유되고 있는 과목
1. Business Strategy and Cross-Funntional Management
2. New Product and Service Development
3. Transforming Business Organization
4. Characteristics of Competitive Korean Firms
5. Process Management and Measures of Progress
6. Managerial Accounting System in a Total Quality Company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범위

제조물 책임론을 경영학 전공의 교과과정에 독립과목으로 책정한다면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포함되어야만 할 내용과 범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다.

첫째로 제조물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업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와 이와 관련된 기업환경의 특성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내용, 둘째로 기업이 창출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과 그 관련된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셋째로 기업이 창출한 재화와 서비스를 최종소비자에게 이전시키는 문제와 이와 관련된 기업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넷째로 제조물 책임문제에 관한 제도적이며, 법률적인 측면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과 기업환경(business and business environment), 품질과 품질경영(quality and quality management), 소비자와 마케팅(consumer and marketing) 그리고 기업법과 제조물 관련법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기업과 기업환경부문에서는 기업과 경영의 개념과 그들간의 관계, 기업환경의 개념, 인식방법 그리고 변화방향(기술적, 법률적, 제도적, 소비자와 시장측면에서), 변화된 기업환경과 의사결정 그리고 기업방침과 전략의 전개, 둘째로 품질과 품질경영에서는 종래의 통계학적 품질관리(statistical quality control) 중심의 내용을 탈피하여 품질과 유사 개념,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품질관리(quality control),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의 개념과 이론, ISO 9.000시리즈와 14.000, 제조물 책임의 개념과 출발 및 전개(현황을 포함), 제조물 책임문제에 대한 기업(생산)차원의 내용과 문제와 같은 구

〈표 12〉 새로이 권유되고 있는 연구

포함되어야 할 부분	기업과 기업환경	품질과 품질경영	소비자와 마케팅	기업법과 제조물 책임관련법
포함되어야 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경영의 개념과 관계 • 기업환경의 개념, 인식방법, 변화 방향 • 변화된 기업 환경과 의사결정 • 기업방침과 전략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과 유사개념 • QA, QC, QM의 개념과 이론 • ISO9.000시리즈와 14.000 • PL의 개념, 출발 및 전개 • 기업(생산)차원 대응과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의 개념과 전개 • 소비자행동과 마케팅전략 • 마케팅에서의 품질중요성 • 소비자주의의 전개와 변화 • 기업(마케팅)차원의 대응과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에 관한 법리와 전개 • 판례로 살펴본 PL의 현황 • 기업(법률적)차원의 대응과 문제
항목의 수	4개	5개	5개	3개

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소비자와 마케팅부문에서는 마케팅의 개념과 전개, 소비자행동과 기업의 마케팅전략, 마케팅에서의 품질의 중요성, 소비자주의의 전개와 변화, 제조물책임에 대한 기업(마케팅)차원의 대응, 넷째로 기업법과 제조물 책임관련법에서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법리와 그의 전개 및 변화, 판례로 살펴 본 제조물 책임문제의 현황, 제조물 책임에 대한 기업(법률적)차원의 대응과 문제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조물책임론의 구성은 17여개의 주요내용으로 체계화한다면 균형된 내용으로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교수방법상의 특징과 문제

제조물 책임론을 교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문제를 반드시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업일수, 둘째 이수단위(학점), 셋째 수업방법이다. 1995년 2월 28일자로 대폭적으로 개정된 교육법 시행령 제62조에 이하하면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은 매학년 30주이상의 수업일수”를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1개학년을 2개 학기제(semester system)로 운영한다면 1개학기에는 최저 15주의 수업일수라면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교육법 시행령 120조에 의하면 (1) 대학의 과정별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

고, 학점당 이수시간,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 매학기 취득기준학점 및 최대취득학점, 특별학점 취득방법, 및 그한도와 예과에 필요한 학점등은 각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2) 제 1 항에서 특별학점이라함은 제11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과정을 조기이수하고 저 하는 학생이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취득하는 학점을 말한다.⁽¹⁷⁾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학에서는 1주에 1시간의 수업이 이뤄지는 경우를 1학점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과목은 1주일에 3시간의 강의를 하고 있음으로 3학점으로 책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학기에 실질적으로 13주정도 강의를 할 수 있다면 39시간내에 교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면 기업과 기업환경 부문에 4개, 품질과 품질경영에 5개, 소비자와 마케팅 부문에 5개 그리고 기업법과 제조물책임관련법에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면 최소한의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 생각된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기업환경에 6시간, 품질과 품질경영에 12시간, 소비자와 마케팅에 12시간 그리고 기업법과 제조물책임관련법에 9시간을 배정한다면 내용에 비례한 것이 될 것이다.

나아가 수업방법에 있어서는 이과목의 이상과 같이 설정된 성격상 강의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경영학 교육에 있어 주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수업방식은 강의방식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¹⁸⁾ 아마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실 때문에 현재에도 틀림없이 이것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본다면 시범설습식, 유도토론식, 문제해결식, 면담식과 같은 다양한 방식들이 배제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 지식의 제공은 적극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상황적 관점의 배양, 문제해결 능력의 배양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동기부여와 같은 것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례분석(case analysis)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의방식에 대비한 사례분석방식의 특징은 다음(표 14)와 같다.

그러나 사례분석방식은 교육방법으로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전제가 반드시 충족되어야함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지난 우리의 경험에 비춰 본다면 이 방식이

(17) 교육법 제115조 제 2 항은 “대학, 사법대학 및 교육대학에서 3년이상 이수한 정원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전과정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110조, 제120조,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년한에 달하기 전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18) 경영학교육의 평가 및 발전연구, 한국경영교육위원회, 1980년, pp.208-209.

〈표 14〉 강의방식과 사례분석방식의 특징

	강의방식	사례분석
• 소요시간	상대적으로 짧음	상대적으로 길음
• 학생참여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 참여자열의	낮음	높음
• 통제주체	강사	강사와 학생공유
• 유연성	낮음	높음
• 책임	강사	학생
• 학습	정보획득	분석기능

자료원: Knudson, Woodworth & Hall. *Management-An Experimental Approach.* 1973. p.2.

크게 왜곡되어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자주 발견한 바 있다.

그러므로 제품책임론은 강의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사례분석방식을 동시에 채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리라고 생각된다. 특별히 여기에서 법률적인 측면은 단순한 법리의 이해만으로는 이 문제의 실체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판례를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방식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마케팅과 생산적 차원에서의 기업의 대응전략문제를 다룰에 있어서도 이 방식은 매우 유용하리라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이 과목은 내용의 구성이 매우 다른 영역의 것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합동강의(team-teaching)방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기대된다.

V. 결 론

제품책임문제는 그동안 주로 일본의 제조기업과 미국의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매우 한정적인 이해를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기업의 세계화 분위기에 힘입어 우리의 많은 기업들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도처에 시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지만 몇가지의 제품책임문제가 미국에서 발생했음을 잘 알려져 있는 터이다.

그리고 미국시장에서 최근 제조물책임 소송에 관하여 살펴 본다면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평결액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별히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평결액수가 큰 경우도 적지만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의 법리도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면 상당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

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도 전혀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문제까지도 포함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제조물책임법이 지난 1개년에 걸친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가게 되었다.

이와같이 제조물책임문제는 기업의 매우 중요한 당면문제로 제기되어 있으나 과거에서와 같이 이는 국지적인 문제라 하여 경영학 교육에서조차 외면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관리론중심의 경영학교과과정을 보유해 왔다. 따라서 생산관리론 또는 품질관리론과 같은 과목이 이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여기에서 개념정도를 소개하고 있거나 전혀 이것조차도 다루고 있지않다.

이와같은 현실은 특별히 경영대학원과 같은 특수대학원에서는 이의 교육목적에 비춰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당연히 기업의 새로운 문제가 창출된다면 그것이 경영학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만 하는가와 같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생성의 소지가 우리와는 다른 경영이론이나 기법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경영학교육의 과제인가라는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이른바 경영이론과 기법의 토착화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의 문제로 제조물책임 문제를 경영학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만 하겠다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때때로 외국으로부터 단순 수입한 이론이나 기법을 참신하다는 측면에서 경탄한 나머지 실질적인 허구성에는 초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재용과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신중히 설계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적인 내용을 설계함에 있어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과목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문제의 성패를 결정지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와 같이 17개로 구성된 제조물책임론의 내용에 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문

한국경영교육위원회, 경영학교육의 평가 및 발전연구, 1980년.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제 2 차 대통령 보고서, 5월 31일, 1995년.

2. 영문

Naumann, Earl Creating Customer Value-The Path to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Thomson Executive Press, 1995.

Gilmore, Harold L. Product Conformance Cost, Quality Progress(ASQC), June 1974.

Leffler, Keith B. "Ambiguous Changes in Product 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82.

Abbott. Lawrence Quality and Competition, N.Y.: Columbia Univ. Press, 1955.

Phillip B. Crosby, Quality is Free, N.Y.: New American Library, 1979.

Progress Report, Sogang-IBM Total Quality Management Partnership,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ogang Univ., March 1995.

Brisbois, Roy M. California Products Liability-Law and Practice, 1985.

Vision for Excellence in Management Education, Sogang-IBM Total Quality Management Partnership,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ogang Univ., Jan. 1994.

Viscusi W.K. & M.J., Moore "Product Liabil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nov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101, Feb. 1993.